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9년 9월 19일
- 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9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 -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(안 제3조)
 -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(안 제4조, 안 제5조)
 - 보조금 지원 및 관리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
 - 안 제3조~제5조에서는 지원대상, 사업대상 등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
 -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발의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- 나.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보조금 지원 및 관리(안 제6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 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 - 다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9. 16.) : 의견 없음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,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)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 및 점검
2. 그 밖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대상)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

제5조(사업대상)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·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·장애인·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

점검 수행

2.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

제6조(보조금 지원 및 관리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
정산 등 제반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
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